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17번째 제안 발표:
로보콜의 재앙을 퇴치**

제안은 통신 회사에 로보콜을 차단하는 기술을 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

*법안은 뉴욕주에 "도용된" 호출로 신원을 위조하고 숨기는 사기꾼의 가면을 벗기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주요 재정적 처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열일곱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끊임없는 로보콜 또는 성가신 전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포괄적인 제안입니다. 이 다방면의 입법 패키지는 통신 회사가 고객이 의심되는 로보콜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성가신 전화를 식별하고 중단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로보콜을 시도하는 이들이 이를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므로, 통신 회사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 기술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뉴욕 외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포함하여 공급자가 잠재적인 로보콜 및 사기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널리 사용 가능한 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안은 또한 뉴욕의 "두낫콜 법(Do Not Call Law)"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전화 서비스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매일 수백만 건의 로보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통신 회사에 방관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이러한 번거로운 전화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로보콜을 거는 이들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법 집행 및 뉴욕의 '두낫콜(Do Not Call)'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두 배로 강화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은 2019년에 모든 휴대전화 통화량의 45% 이상이 로보콜이나 사기 전화인 것으로 예상하며, **매일 1,040만 건의 로보콜이** 뉴욕 주민들에게 걸려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용 기술로 더욱 증가한 로보콜의 재앙은 사기꾼과 파렴치한 텔레마케터에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교활한 관문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또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린 전화에 응답하지 않도록 하여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큰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 전문가와 공립학교의 중요한 전화를 무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그의 2020년 시정 방침 연설(2020 State of the State Address)의 일환으로 사기꾼과 불법 로보콜을 거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전화 공급자가 로보콜을 차단하거나 책임을 지도록 요구

뉴욕의 소비자들은 매달 전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이 회사들은 매일 수백만 건의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전화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통신 제공업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로보콜 차단 기술을 배포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회사는 요청이 있을 때만 기술을 제공합니다. 로보콜을 막기 위해 이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기업은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또는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State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이 책임을 물어 조사를 시행하고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발신자를 표시하기 위해 전화 인증 기술의 신속한 구현 요구

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모든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는 가능한 한 빨리 산업 기반 통화 인증 절차인 STIR/SHAKEN 절차를 완벽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STIR/SHAKEN 절차는 뉴욕 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전화번호에 대한 추가 발신자 ID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잠재적 사기 및 로보콜을 경고하기 위해 통신 산업이 개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현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발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낫콜(Do Not Call)" 법을 위반한 로보콜 발신자에 대한 처벌을 두배로 강화

뉴욕의 "두낫콜(Do Not Call)" 법은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State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에 주의 두낫콜 등록(Do Not Call Registry)에 가입한 뉴욕 주민들에게 원치 않는 전화를 걸고 나쁜 행위를 추적하고 처벌할 집행 권한을 제공합니다. 통신 회사가 로보콜을 차단하지 못했을 경우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주지사는 "두낫콜(Do Not Call)" 위반자에 대한 현재 최대 벌금을 통화당 11,000달러에서 최대 22,000달러까지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전화를 받는 경우, 뉴욕 주민들은 해당 전화를 온라인 사이트 www.donotcall.gov 또는 888-382-122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 등록(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의 [두낫콜 가이드\(Do Not Call Guide\)](#)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